

광주지방법원 2022. 9. 20 선고 2022가단5069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일본인 D

변 론 종 결 2022. 9. 6.

판 결 선 고 2022. 9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E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
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21. 6. 3. 접수 제9581호로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와 E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동 등기소 2021. 6. 3.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

원고는 2016. 8. 23. E과 사이 70,000,000원의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2. 2. 15. 기준 대출 48,435,275원(= 원금 48,000,000원 + 대출이자 등 435,275원)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.

나. E의 처분행위

E은 2021. 6. 3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함에 따라, 피고에게 2021. 6. 3.자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21. 6. 3. 접수 제95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
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,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이 1,120,000,000원이고 소극재산은 540,600,000원인바, 19,6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 하더라도, E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

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E의 무자력 여부
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.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48825 판결 등 참조).
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E이 무자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다른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E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소연

부 동 산 표 시

1. 전라남도 화순군
대 205㎡

2.
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26.5㎡
부속건물
블록조 스테이지상 단층 창고 10㎡
== 이 상 ==

